

강한공주 행복한시민

시 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964호 2026. 1. 15.(목)

www.gongju.go.kr



선 람	기관위원장	회 람						



발행 : 공주시 편집 : 홍보미디어실 ☎ 041-840-8464
우)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규 칙】

제694호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
제695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12

【훈 령】

제343호 공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50

【공 고】

제2026-5호 문화공원(산성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 55
제2026-1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59
제2026-77호 공주문화 관광지 조성사업(3, 4단계)의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62
제2026-89호 공주시 청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63
제2026-90호 공주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0
제2026-97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76
제2026-100호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80
제2026-101호 공주시 도시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91
제2026-103호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3
제2026-118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4

【고 시】

제2025-247호 탄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110
제2026-8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112
제2026-10호 계룡 무궁화 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114
제2026-11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117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사표지판: 3천만원
2. 시설표지판: 3천만원
3. 운영표지판: 1천만원
4. 물품(장비)표지판: 5백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또는 일회성 사업을 하는 경우
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하여 미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경우
3. 그 밖에 개별 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제3조(표지판 설치 등)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 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금 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4. 물품(장비)표지판: 보조금으로 장비를 구입한 날로부터 5년간

③ 표지판을 설치한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형식 등)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형식과 규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의 철거·훼손·용도변경·분실 시 이를 즉시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및 점검)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4조 관련)

1. 공사표지판

 이 공사는 공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 사 명			
공사개요			
발 주 자			
설 계 자			
시 공 자			
감 리 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 사 금 액	백만원(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착 공 연 월 일		준 공(예정)연월일	
사업담당부서	000과 000팀 (041-000-0000)		

2. 시설표지판

 공주시 보조금지원 건립시설	
<input type="checkbox"/> 보조사업명 :	
<input type="checkbox"/> 보조사업자 :	
<input type="checkbox"/> 보조금액 :	백만원(국비 도비 시비)
<input type="checkbox"/> 준공일자 :	20
<input type="checkbox"/> 의무표시기간 :	20 ~ 20
<input type="checkbox"/> 담당부서 :	공주시 000과(041-000-0000)
이 시설은 공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되었습니다.	

3. 운영표지판



공주시 보조금지원 운영시설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업내용 :
 보조금액 : 백만원(국비 도비 시비)
 보조금지원기간 : 20 . . . ~ 20 . . .
 담당부서 : 공주시 000과(041-000-0000)
이 시설은 공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물품(장비)표지판



공주시 보조금지원 장비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보조금액 : 백만원(국비 도비 시비)
 의무표시기간 : 20 . . . ~ 20 . . .
 담당부서 : 공주시 000과(041-000-0000)
이 장비는 공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 보조사업자가 같은 시설 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별표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재질 등(제4조 관련)

종 류	규격(단위: cm)		설치높이 (단위: m)	재 질	글씨 및 색체
	최 대	최 소			
보조금 지 원 표지판	가로: 100 이하 세로: 80 이하	가로: 30 이상 세로: 20 이상	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	금속·비금속· 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형태, 표지판 부착면 마감재 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확대 등 변경 가능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관리번호 ○○표지판 - 제○○호)

보조사업의 개요

사업명	
소재지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사업기간	20 . . ~ 20 . .

표지판 설치

설치일자	
위치	
규격	
재질	
글씨체	
〈 변경사항 〉 ○	

표지판의 관리점검결과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결과	
문제점	
조치사항	
향후계획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보조사업 개요

사업명	
소재지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사업기간	20 . . ~ 20 . .

표지판 변경

구분	당초	변경
설치일자		
위치		
종류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물품표지판()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물품표지판()
규격		
재질		
글씨체		
내용		

* 붙임: 현장사진 1매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한다”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의2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2의 학예연구의 학예일반 중 “문화재관리학”을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5조제5항·제6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류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국가유산관리학 ,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미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국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국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편사연구	편사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	기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기	전자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금속	
	섬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산업경영	
	물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류		
농업연구	작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산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원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축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식품개발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수지연구	조경		
	수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류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가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	의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약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환경연구	환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	토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건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방재안전 연구	안전관리		안전공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보험학, 통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항해학, 경찰학, 정책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소방학, 소방방재학, 소방행정학 또는 위기관리학을 전공한 사람
	재난관리		방재안전학, 도시방재학, 토목공학, 보건학, 보건환경안전학, 기상학, 도시공학, 지형공간정보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지질학, 미생물학, 수의학, 원자력공학, 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비 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데 이 터	기 사 : 컴퓨터시스템 ,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 금형, 설비보전 ,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 전산응용기계제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톨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 금형, 설비보전 ,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 능 사 : 선체설계, 선체건조, 선박기관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품질경영 산업기사 :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 품질경영 기 능 사 : 자동화설비, 전자기기, 임베디드,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농 업	일반농업	기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식물검역	기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안전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업 ,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p>기 술 사 : 해양, 어업, 수질관리</p> <p>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p>
	일반선박	<p>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p> <p>기 사 : 일반기계, 조선</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p>
	선박항해	<p>기 술 사 : 조선</p> <p>기 사 : 조선, 항로표지</p> <p>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p>
	선박기관	<p>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p> <p>기 사 : 일반기계</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p>
	해양교통 시 설	<p>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 능 장 : 전기, 전자</p> <p>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p> <p>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p>
보 건	보 건	<p>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p> <p>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p> <p>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p> <p>기 능 사 : 식품가공</p>
의료기술	의료기술	<p>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p>
식품위생	식품위생	<p>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p> <p>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p> <p>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환 경	일반환경	<p>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p>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p>
	대 기	<p>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p>
	폐 기 물	<p>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p>
항 공	일반항공	<p>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p>
	정 비	<p>기 사 : 항공</p> <p>산업기사 : 항공</p>
시 설	도시계획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p> <p>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일반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수도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건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운수운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지 적	<p>기술사 : 지적</p> <p>기사 : 지적</p>
	측 지	<p>산업기사 : 지적</p> <p>기능사 : 지적</p>
	교통시설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도시교통 설 계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디자인	<p>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p> <p>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p> <p>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p> <p>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개발</p>	
방재안전	방재안전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p>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통신기술	기능장 : 전자, 통신설비
	전송기술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술	<p>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p>기능사 : 전자기기,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p>
조 리	조 리	<p>기능장 : 조리</p> <p>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p> <p>기능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p>
위 생	사 역	기능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p> <p>기능사 : 전기, 설비보전, 조경</p>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감정평가사(7)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작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작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작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이터					
사서	사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보건의료정보관리 사(12) 안경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 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보건의료정보관리 사(8) 안경사(8) 방사성동위원소취 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 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보건의료정보관리 사(5) 안경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 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보건의료정보관리 사(2) 안경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수 질						
	대 기						
	폐 기 물		1급(7)	1급(3)	1급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 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제3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계급		연구관	연구사
	직렬	직류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	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안전 , 화학분석)
	화	학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약사, 위생사(5)
	작물보호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 3. 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직렬	계급		연구관	연구사
	직류			
농업연구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안전 ,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농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정,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계설계)
	농식품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	임업		기술사(조정,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정,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조정			
수의연구	수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업)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보건연구	의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직렬	계급		연구관	연구사
	직류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기사(방재)
	재난관리			기사(방재)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직렬	직류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안전 ,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가	축	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	촌	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	업	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	업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	촌	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 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데 이 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테 이 터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 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배관)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톨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자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업	가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안전)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식품)
녹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의	수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안전 ,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어로				
	해양교통시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건	보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보건	방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간호사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정,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정,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정,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조 중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재)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컴퓨터시스템,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설비보전, 조경)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의3제2항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직 렬	직 류	국가기술편자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	일반기계	<p>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p> <p>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p>	
	농업기계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p>	
	기계운전	<p>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p> <p>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톨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p>	
조 선	<p>기 술 사 : 조선</p> <p>기 사 : 일반기계, 조선</p> <p>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p> <p>기 능 사 : 선체설계, 선체건조, 선박기관정비</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일반전기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p>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p> <p>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p>	
	전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임베디드, 반도체설계, 컴퓨터시스템,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p> <p>기능사 : 자동화설비, 전자기기, 컴퓨터시스템, 전자카드</p>	
	원자력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p> <p>산업기사 : 에너지관리</p>	<p>기사자격증</p> <p>간비용 적용 : 원자로 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p>
	금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섬유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p> <p>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p> <p>기능사 : 염색</p> <p>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일반화공	<p>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 : 위험물, 가스</p> <p>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자 원	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 바이오 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식물검역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안전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의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안전 ,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나무의사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나무의사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조경,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나무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 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업,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 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산업기사: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수 질	기술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대 기	기술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능장: 산림 기사: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폐 기 물	기술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능장: 산림 기사: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 설	도시계획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p> <p>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수도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건 축	건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운수운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채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측 지	<p>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교통시설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도시교통시설계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디자인	<p>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p> <p>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p> <p>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p> <p>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개발</p>	<p>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p>
방재안전	방재안전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p>	
방재통신	통신사	<p>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p> <p>기능장 : 전자, 통신설비</p>	
	통신기술	<p>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송기술	<p>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자통신기술	<p>기능사 : 전자기기,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p>	
시설관리	시설관리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p> <p>기능사 : 전기, 설비보전, 조경</p>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농촌지도	<p>농업기계</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공업연구	전기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전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p>	
	금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섬 유	<p>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p> <p>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p>	
	화 공	<p>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 능 장 : 위험물, 가스</p> <p>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p>	
	화 학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산업경영	<p>기 술 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p> <p>기 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p>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물 리	<p>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 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p> <p>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p>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p>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p> <p>기사 :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p> <p>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p>	<p>산업기사 자격증</p> <p>가산 비율 적용</p> <p>:영양사, 위생사</p>
	작 물	<p>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p>	
농촌지도	농 업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농업연구	원 예	<p>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p> <p>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p>	
농촌지도	원 예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p>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연구	농업환경	<p>기술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p> <p>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p> <p>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p>	
	산업곤충	<p>기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p> <p>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p>	
농촌지도	잡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생명유전	<p>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p> <p>산업기사 : 종자, 식품</p>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p>기술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p> <p>기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p>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연구	농 공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세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업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산업기사 : 자동화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	축 산	<p>기술사 : 축산, 식품</p> <p>기사 : 축산, 식품안전</p>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농촌지도	축 산	산업기사 : 축산, 식품	
녹지연구	임 업	<p>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p> <p>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p>	
	조 경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촌지도	임 업		
수의연구	수 의	<p>기술사 : 축산</p> <p>기사 : 축산</p>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산업기사 : 축산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p>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p>	
	수산자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어촌지도	어 촌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해양수산 연 구	수산양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 술 사 : 해양, 어업,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식품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환경연구	환경	<p>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시설연구	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농촌지도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시설연구	건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방재안전 연구	안전 관리 재난 관리	<p>기사 : 방재</p>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 심사”를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접수받은”을 “접수한”으로, “사전 심사하여”를 “사전심사하고”로, “예산 부서”를 “예산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심사를 하여”를 “심사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전 심사”를 “사전심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본청 국장 및 직속기관 소장

2. 인사부서의 장

3. 예산부서의 장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의결서를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기준법 제26조”를 “「근로기준법」 제26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9)”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퇴직 또는”을 “퇴직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에”로, “「소득세법」 제22조”를 “「소득세법」 제22조”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기간제노동자의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을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74조”를 “「근로기준법」 제74조”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병역법」 또는”을 “「병역법」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직선거법」 제34조”를 “「공직선거법」 제34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간제근로자는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을 “병가일수가 연 7일 이상인 되는 날부터는 매 회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2조의 연차유급휴가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판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 180일 범위에서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 공무상 병가 사용 시 보상은 제31조에 따른다.

⑥ 병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연도 내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한다”를 “같은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2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2항”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전단 중 “있으며,”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활용 하여야”를 “활용하여야”로 한다.

제30조 중 “질병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질병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자에”를 “기간제근로자에”로 한다.

제31조 중 “의 규정에 따라 제보상을 행한다”를 “에 따라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안”을 “아니”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공원(산성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

공주시 산성동 181-149번지 일원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산성문화공원)의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6 년 1 월 2 일

공 주 시 장

1. 공람 기간 : 2026. 1. 15. ~ 1. 29. (14일간)
2. 공람 장소 : 공주시청(경제과), 응진동 행정복지센터
3.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6. 1. 29. 18:00
 - 제 출 처 : 공람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이용
4. 공람 내용
 - 공원(산성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 첨부
5. 기타
 - 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은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며 본 결정(변경)(안)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 향후 행정절차(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행 중 본 공람·공고 내용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며, 공람 장소에서 필사 및 사진촬영은 금지합니다.
 - 관련도면은 공람 장소에 비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과 소상공인팀 (☎041-840-82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원(산성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5	산성 문화공원	문화 공원	산성동 181-149번지 일원	3,680	-	3,680	10.04.01 (공주 고시 제2010-48호)	

②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가.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680.00	-	3,680.00	96.05	증)67.08	163.13	96.05	증)67.08	163.13	95	감)41	54		
세 부 시 설	시설 소계	3,338.14	증)67.61	3,405.75	96.05	증)67.08	163.13	96.05	증)67.08	163.13	50	감)22	25	시설률 : 90.7% → 92.5% ※ 시설률 (법적기준) : 제한없음 간폐율 : 2.6% → 4.4% ※ 간 폐 율 (지침기준) : 20.0% 이내
	기 반 시 설	소계	2,516.89	증)45.71	2,562.60	-	-	-	-	-	25	감)10	15	
		광장	2,516.89	증)45.71	2,562.60	-	-	-	-	-	25	감)10	15	
	조경시설	393.42	-	393.42	-	-	-	-	-	-	1	-	1	
	휴양시설	221.28	감)88.77	132.51	-	-	-	-	-	-	21	감)19	2	
	운동시설	-	증)34.13	34.13	-	-	-	-	-	-	-	증)6	6	
	교양시설	161.86	감)69.96	91.90	60.00	감)60.00	-	60.00	감)60.00	-	2	감)1	1	
편익시설	44.69	증)146.50	191.19	36.05	증)127.08	163.13	36.05	증)127.08	163.13	1	감)1	-		
녹지 및 기타	341.86	감)67.61	274.25	-	-	-	-	-	-	45	감)16	29		

나-1.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 기정

시설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3,680.00	96.05	96.05	95	
시설부지 소계			3,338.14	96.05	96.05	50	90.7%
기반시설	소계		2,516.89	-	-	25	
	가-1	광장	2,516.89	-	-	25	
조경시설	소계		393.42	-	-	1	
	나-1	수경시설	393.42	-	-	1	
휴양시설	소계		221.28	-	-	21	
	다-1	쉼터	221.28	-	-	21	
교양시설	소계		161.86	60.00	60.00	2	
	라-1	문화홍보관	69.96	60.00	60.00	1	
	라-2	야외공연장	91.90	-	-	1	
편익시설	소계		44.69	36.05	36.05	1	
	마-1	화장실	44.69	36.05	36.05	1	
녹지 및 기타부지			341.86	-	-	45	9.3%
녹지 및	소계		341.86	-	-	45	
기타	-	녹지	341.86	-	-	45	

나-2.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

시설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3,680.00	163.13	163.13	54	
시설부지 소계			3,405.75	163.13	163.13	25	92.5%
기반시설	소계		2,562.60	-	-	15	
	가-1	광장	2,562.60	-	-	15	
조경시설	소계		393.42	-	-	1	
	나-1	수경시설	393.42	-	-	1	
휴양시설	소계		132.51	-	-	2	
	다-1	쉼터A	77.07	-	-	2	
	다-2	쉼터B	55.44	-	-	-	
운동시설	소계		34.13	-	-	6	
	라-1	체력단련장	34.13	-	-	6	
교양시설	소계		91.90	-	-	1	
	마-1	야외공연장	91.90	-	-	1	
편익시설	소계		191.19	128.18	128.18	-	
	바-1	화장실	44.69	34.95	34.95	-	
	바-2	일반음식점	127.15	110.47	110.47	-	
	바-3	관리사무소	19.35	17.71	17.71	-	
녹지 및 기타부지			274.25	-	-	29	7.5%
녹지 및	소계		274.25	-	-	29	
기타	-	녹지	274.25	-	-	29	

의견제출서식

의견 제출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제출내용】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0번지 일원 복합모험활동 구조물 설치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칭 : 복합모험활동 구조물 설치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0번지 일원
 - 면적 : 공작물 면적(A=810㎡)
 - 내용 : 강구조 공작물 1개소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감)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둔산동)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6. 02. 28.

6. 공람기간 : 2026. 01. 15. ~ 2026. 01. 29. (14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8.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6. 01. 29. 18:00

- 제출처 : 공람 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이용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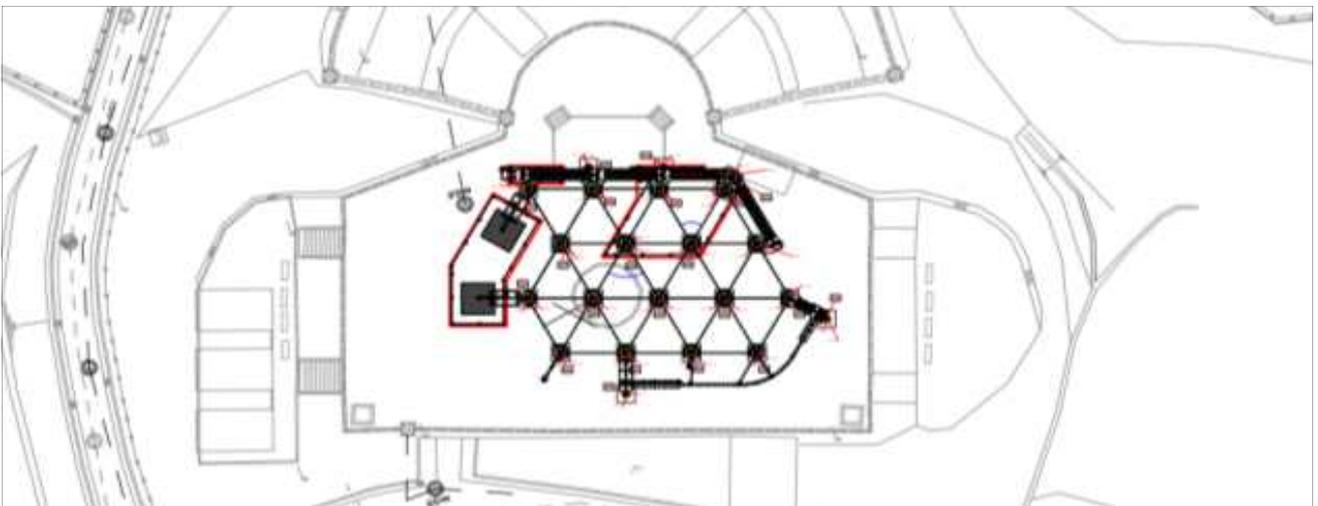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지 번	지목	대장면적	사업면적	소 유 자	비고
1	360	대	140,181	810	대전광역시(교육감)	

붙임2. 위치도



붙임3. 계획평면도



공주문화 관광지 조성사업(3, 4단계)의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주문화 관광지 조성사업(3,4단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 제2호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 15.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보상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공주 문화관광지 조성사업(3,4단계)

3. 출입자 : 공익사업 업무 담당자(증표소지자)

4. 출입기간 : 출입통지 5일 후부터 ~ 사업완료시 까지

5. 출입목적 :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편입 토지 및 물건(지장물) 등 조사, 감정평가, 측량, 공사 관련 등

6. 출입대상토지 및 소유자 : “붙임” 토지목록과 같음

7. 문 의 처 : 한국부동산원 충청지역본부 공익보상부(042-485-1152)

8. 기타

-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사업시행자는 측량·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주소 불명, 미송달 등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공고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같음합니다.

공주시 공고 제2026-89호

「공주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공주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와 청렴문화 조성 정책 추진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청렴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정 목적(제1조)

- 청렴문화 조성·확산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실현

시장의 책무(제3조)

-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노력

□ 공직자의 청렴 의무(제4조)

-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일체의 부패행위 등 금지

□ 청렴주간 운영 및 청렴문화 조성 종합대책 수립·추진(제6조, 제7조)

- 매년 청렴주간 지정하여 각종 교육 및 홍보활동 운영
- 매년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청렴문화조성 기본방향, 청렴주간 지정 등 포함) 수립·추진

□ 청렴문화 조성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추진(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공직자 등 반부패·청렴도 평가, 청렴 및 부패사례 설문조사 등
- 외부기관에 청렴도 평가·조사 위탁 가능
- 청렴 관련 시책 홍보 시 필요 물품 무상 제공 가능

□ 청렴포상(제12조)

-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과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당첨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부여

3. 입법예고기간 : 2026. 1. 15. ~ 2026. 2. 4. (20일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공주시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전화: (041) 840 - 2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주실 곳 : 공주시청 기획감사실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청, 기획감사실) / 32552

- 전화 : ☎ 041) 840-2055, 팩스 : (041) 840-3705, 전자우편 : kwonjy9108@korea.kr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기획감사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시 청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공주시 기획감사실 청렴감사팀 (☎ 041-840-2055)

제출방법 ㄱ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ㄴ FAX : 041-840-3705, 전자우편 : kwonjy9108@korea.kr

공주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공주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청렴주간 운영) 시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렴주간을 지정하여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청림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① 시장은 청림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림문화조성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림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림문화조성의 기본방향
3. 청림문화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림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청림주간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청림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때에는 시민, 시의회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림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청림도 향상 활동) 시장은 청림도 향상 및 청림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림 교육 및 홍보
2. 공직자 등 반부패·청림도 평가
3. 청림 및 부패사례 설문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청렴도 평가·조사) 시장은 청렴도 측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설문조사 등 평가·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① 시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렴 관련 시책을 홍보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활용하여 시민과 공직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청렴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
2. 설문조사, 청렴시책 등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당첨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제2026-90호

「공주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위원회별 상이한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국민권의 위원회의 개정 권고)
- 나. 위원 임기 및 연임 규정을 개정하여 우수 인력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 가. 임기·연임 및 위원 구성 관련 사항(제5조)
 - 임기 규정: 1년→ 2년 -연임 규정: 한 차례→ 두 차례만
- 나. 올바른 표기(맞춤법, 띄어쓰기 등) 사용(제2조, 제2조 3, 제3조, 제7조)
 - 띄어쓰기: 이하"위원회"라 한다 → 이하 "위원회"라 한다
 - 맞춤법: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 사람 중에서

3. 입법예고기간 : 2026. 01. 15. ~ 2026. 02. 04.(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2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
- 전화: 041)840-3404 / FAX: 041)840-2343, 전자우편 :karsealin@korea.kr

5. 참고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처 : 공주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041-840-3404)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내산목천길 52-15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 FAX : 041-840-2346, 전자우편 : karsealin@korea.kr

공주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를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능) 공주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p> <p>1.·2. (생략)</p> <p>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 등에 관한 사항</p> <p>4. ~ 6. (생략)</p> <p>제3조(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u>성별을 고려하여</u>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 4. (생략)</p> <p>제5조(임기) ① <u>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u> 연임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7조(회의) ① (생략)</p> <p>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u>위원의 3분의 1이상</u>이 요구</p>	<p>제2조(기능) ----- -----<u>(이하 “위원회”라 한다)</u>----- -----.</p> <p>1.·2. (현행과 같음)</p> <p>3.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u>」 ----- ----- -----</p> <p>4. ~ 6. (현행과 같음)</p> <p>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사람 중에서</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5조(임기) ① <u>위촉직 위원</u>-- 2년으로 하되, <u>두 차례만</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1 이상</u>-----</p>

하는 때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공주시 옥룡동 32-1번지 일원 공동체 플러스센터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옥룡동 3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칭 : 공동체 플러스센터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32-1번지 일원
 - 면적 : 사업면적(A=2,968㎡)
 - 내용 : 아스콘 포장 (A=925㎡), 투수블럭(A=537㎡) 등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공주시장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6. 06. 30.

6. 공람기간 : 2026. 01. 15. ~ 2026. 01. 29. (14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지역활력과

8.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6. 01. 29.

- 제출처 : 공람 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이용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55) 및
지역활력과(☎041-840-23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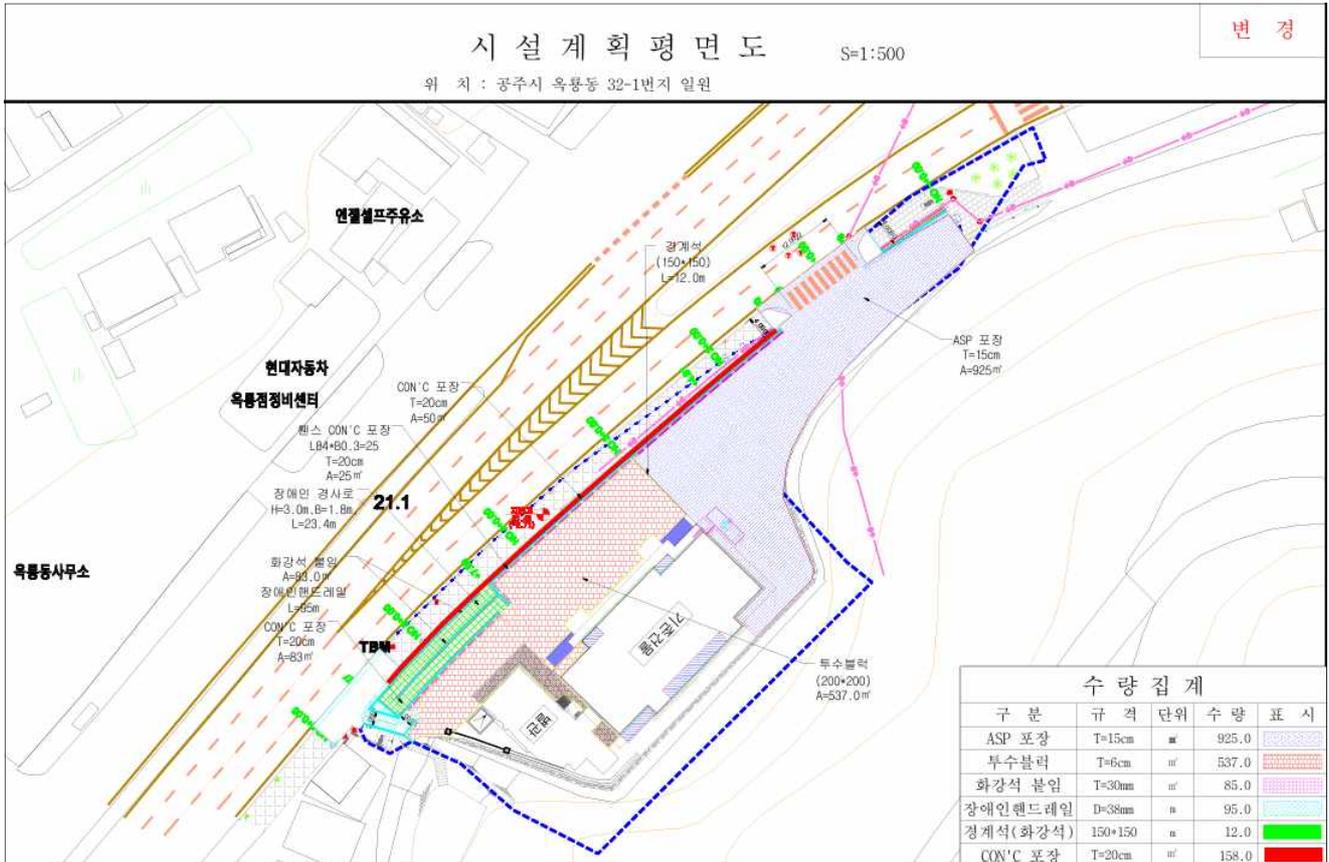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사업면적	소유자	비고
1	32-1	대	2,235	2,225	공주시	
2	32-10	대	90	90	공주시	
3	32-11	대	46	46	공주시	
4	24-1	대	112	112	공주시	
5	24-2	대	132	132	공주시	
6	24-4	대	165	165	공주시	
7	24-5	대	69	69	공주시	
8	24-6	대	129	129	공주시	
	합계		2,978	2,968		

붙임2. 위치도



붙임3. 계획평면도



공주시 공고 제2026-100호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현실에 맞게 삭제하고자 하며,
-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준수 및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에 따라 선발기준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현실에 맞게 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제3항 삭제)
-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
 - 선발기준(이통장 경력, 수혜 횟수, 통장 상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별표1 신설)
 -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 마련(안 제2조제4항제6호 변경)
 -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조제4항제8호 신설)

-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및 현행에 맞게 성적기준 변경
 - 중학생 신입생 성적기준 미적용 내용 명시(안 제2조제4항제1호가목 단서 신설)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고등학생 성적기준 내용 명시
(안 제2조제4항제1호나목 변경)
 - 고등학생 신입생 성적기준 내용 명시(안 제2조제4항제1호나목 단서 변경)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 15. ~ 2026. 2. 4.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교육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교육체육과(교육정책팀)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청, 교육체육과) / 32552
- 이메일 : kangsb1303@korea.kr
- 전 화 : 041-840-8643 / FAX : 041-840-3708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시행규칙명 :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공주시청 교육체육과 교육정책팀 (☎ 041-840-8643)

제출방법 ㄱ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ㄴ FAX : 041-840-3708, 전자우편 : kangsb1303@korea.kr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규칙은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이하“조례”라 한다)”를 “(이하 “조례”라 한다)”로, “제3호”를 “제4호”로, “(이하“재단”이라 한다)”을 “(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5조제5호”로, “(이하“시장”이라 한다)”를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제4항제1호가목 중 “학업성적우수 중학생”을 “중학생”으로, “평가가“미또는 C”이상”을 “평가가 “C”이상”으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제4항제1호나목 본문 중 “학업성적우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을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 석차가 3등급 이내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하며, 기존 9등급제를 적용하는 경우 과목별”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의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C” 이상 과

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생은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제2조제4항제1호다목 본문 중 “**학업성적우수 대학생**”을 “**대학생**”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에 따른**”을 “**「초·중
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정고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일정한
기준**”을 “**별표 1 선발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한다**”를 “**1자녀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장학금 지급 도중 이·통장이 사퇴하거나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불미
스러운 행위를 한 경우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선발기준
(제2조제4항제4호와 관련)

1. 이·통장 경력: 장기 근속 이·통장 우대를 위해 근속연수 반영

근속연수	7년이상	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3년미만
점 수	40	35	30	25	20	15

2. 수혜 횟수: 특정 이·통장 수혜만이 아닌 공평한 기회 제공

수혜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이상
점 수	50	45	40	35	30	25

- 직전년도 수혜자 감점(-10)

3. 통장 상훈: 시정발전 기여도 반영(상위 훈격 1개만 인정)

훈 격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도지사	시장
점 수	10	9	8	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규칙은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u>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장학생 지원사업) ①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이하“<u>조례</u>”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u>제3호</u>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공주시 장학재단(이하“<u>재단</u>”이라 한다) 정관에 따른다.</p> <p>② <u>조례 제5조제4호</u>부터 제6호까지의 장학생 선발은 공주시장(이하“<u>시장</u>”이라 한다)이 한다.</p> <p>③ <u>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u></p> <p>1. <u>장학생의 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저소득 다문화 가족의 자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u></p> <p>가. <u>학업성적우수 중학생 선발은 과목별 학업성취도</u></p>	<p>제1조(목적) -- <u>규칙은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u>-----</p> <p>-----.</p> <p>제2조(장학생 지원사업) ① ----</p> <p>-----</p> <p>----- (<u>이하 “조례”라 한다</u>) ----</p> <p>----- <u>제4호</u>-----</p> <p>-----</p> <p>-----(<u>이하 “재단”이라 한다</u>) -----.</p> <p>② --- <u>제5조제5호</u>-----</p> <p>----- 공주시장 (<u>이하 “시장”이라 한다</u>)-----.</p> <p><u><삭 제></u></p>

평가가“미 또는 C”이상 과
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
생으로 한다.

나. 학업성적우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 석차가 5등
급 이내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
만,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의 과목별 학업성취
도 평가가“미 또는 C”이상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하며,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에 따른 합격생은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으
로 한다.

다. 특기생 장학생 선발은 효
행 및 기능·예능·체육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
난 학생으로 한다.

2. 시장은 학교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한 학생 중
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
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
한다.

3.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은 재단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장학생의 자격은 이·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가. 학업성적우수 중학생 선발은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미 또는 C” 이상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단서 신설>

나. 학업성적우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 석차가 5등급 이내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제2조제3항제1호나목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
-----.

1. -----

-----.

가. 중학생 -----

평가가 “C” 이상 -----

----- . 다만, 신입생의 경우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 석차가 3등급 이내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하며, 기존 9등급제를 적용하는 경우 과목별 ---. 다만,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의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C” 이상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생은 전과목

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
은 제외한다.

7. (생 략)

<신 설>

7. (현행과 같음)

8. 장학금 지급 도중 이·통장이
사퇴하거나 주민으로부터 지
탄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경우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
거나 환수할 수 있다.

공주시 도시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죽당리 일원의 『금강(어천~죽당)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26년 01월 15일

공 주 시 장

1. 공람 기간 : 2026. 01. 15. ~ 01. 29. (15일간)
2. 공람 장소 : 공주시 휴양공원과, 우성면 행정복지센터
3.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6. 01. 29.
 - 제 출 처 : 공람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이용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4. 공람 내용
 - 공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별첨(공람장소 별도 비치)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별첨(공람장소 별도 비치)
5. 기타
 - 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며 본 결정(변경)(안)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 향후 행정절차(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자문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행 중 본 공람·공고내용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며, 공람장소에서 필사 및 사진촬영은 금지합니다.
 - 관련도서는 공람 장소에 비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휴양공원과 정원시설팀(☎ 041-840-85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46,824	-	446,824	100.0	
관 리 지 역	소 계	9,383	증) 437,441	446,824	100.0
	보전관리지역	5,809	증) 441,015	446,824	100.0
	생산관리지역	3,574	감) 3,574	-	-
	계획관리지역	-	-	-	-
농림지역	437,441	감) 437,441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①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죽당 리 일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46,824	1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원조성사업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토지조서 면적 오기 정정(25년 12월 공고)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현행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정책실명제 관련 용어 정의 및 책임관 임무를 신설하고, 사업내역서 시각적 자료 추가 등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명확한 정책 추진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 나. 공주시 자체평가위원회로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포상 범위 변경 등 제도 세부 운영기준을 정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책실명제 관련 용어 정의,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 신설(안 제2조, 제4조)
- 나. 공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안 5조)
 -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른 기능

유사·중복 위원회 통합 권고에 따라 개최 빈도가 낮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공주시 자체평가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공주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절차 구체화 및 공개 내용 추가(안 제6조, 제7조, 제8조, 별지 제1호 ~ 제2호서식)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절차 구체화) 사업부서가 사업 내역서를 제출하고, 총괄부서가 이를 종합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공개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
- (사업내역서 서식 변경) 추진율, 위치도, 조감도 등 정책 집행 상황 및 시각 자료 추가

라. 포상범위 변경 : 우수부서 및 공무원 → 우수부서(안 제9조)

마. 기타 어문규범에 따른 자구 수정 및 띄어쓰기(안 제3조, 제10조)

3. 입법예고기간 : 2026. 1. 15. ~ 2026. 2. 4.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미래전략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

○ 제출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미래전략실(정책개발팀)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840-2082 / 팩스 : 041-881-6716, 전자우편 : milk2121@korea.kr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누리집(<https://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공주시 미래전략실 정책개발팀 ☎ 041-840-2082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팩스 : 041-881-6716, 전자우편 : milk2121@korea.kr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시민

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시정 현안(시와 관련된 국정·도정과제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시설공사, 전기 및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사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공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공주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등록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주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이력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2회(상·하반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상황과 정책참여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을 공주시 누리집에 수정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평가 및 포상) 시장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에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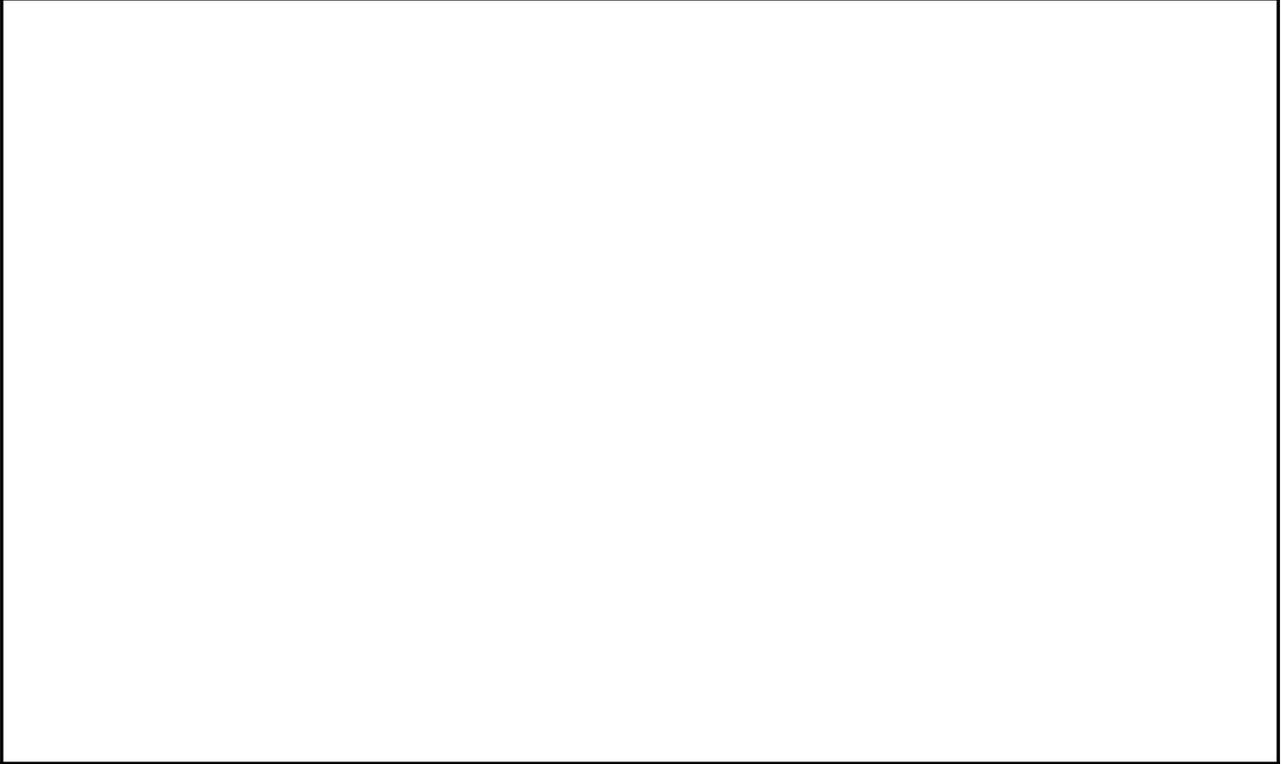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기간		⑤ 추진율	
⑥ 사업부서		⑦ 담당자	
⑧ 선정기준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00.00.00.		○○○ 시장 ○○○ 부시장 ○○○ 국장 ○○○ 부서장 ○○○ 팀장 ○○○ 주무관
○ 내용	‘00.00.00.		○○○ 부서장 ○○○ 팀장 ○○○ 주무관

<기재 항목>

- ① 정책사업명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사업명 그대로 기재
-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 ④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⑤ 추진율 : 총 사업(용역)량 중 진행한 양의 비율 기재(방침결재, 설계 등 포함)
- ⑥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실·과 단위) 기재
- ⑦ 담당자 : 현 사업 담당자, 사업 담당 팀장 및 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 ⑧ 선정기준 : 조례 제3조 각 호의 사항 중 선택 기재
 - ※ <주요 추진내용>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완료할 때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의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경로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위치도 및 조감도>

① 위치도



② 조감도



공주시 공고 제 2026-118 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공주시 공영주차장 확충에 따라 주차장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 안에서 발생하는 접촉사고 등 주차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차구획선 침범 행위 등 주차질서 위반과 관련한 민원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나. 이에 공주시는 국내 최초로 수직주차선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주차환경 개선 및 안전주차 효과를 확인하였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를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 다. 따라서 수직주차선의 설치기준을 이번 조례에 신설하여, 향후 실시설계 및 관련 사업 추진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게재합니다.

2. 주요내용

- 가. 시설물 정의
 - 1) 시설물 정의 신설
 - 수직주차선 정의 : 주차구획의 세로 주차구획선을 주차구획 후방 시설물의 일정 높이까지 수직으로 연장한 주차구획선
 - 주차구획 후방 이격거리 정의 : 주차구획 내 설치된 주차정지턱과 주차구획 후방 시설물 간의 거리

2) 수직주차선 설치기준(높이, 너비) 신설

-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한 주차를 위하여 수직주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항에 따른 수직주차선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주차장의 구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수직주차선의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3) 시설물 설치기준표 신설

- 수직주차선 설치 조건 : 주차구획 후방 이격거리가 1미터 이상
- 수직주차선 설치기준

구 분	설 치 기 준	비 고
수직주차선 높이	0.7미터 이하	기존 주차구획선 색상과 동일하게 도색
수직주차선 너비	기존 주차구획선 너비와 동일 또는 주차장 구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0.1미터 이상 0.15미터 이하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등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교통과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840-7772 / FAX : 041-881-9681

4. 참고사항

본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공주시 교통과 교통안전팀(☎ 041-840-7772)

제출방법 ㄱ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ㄴ FAX : 041-881-9681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직주차선: 주차구획의 세로 주차구획선을 주차구획 후방 시설물의 일정 높이까지 수직으로 연장한 주차구획선
4. 주차구획 후방 이격거리: 주차구획 내 설치된 주차정지턱과 주차구획 후방 시설물 간의 거리

제1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한 주차를 위하여 수직주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수직주차선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주차장의 구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수직주차선의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수직주차선 설치기준(제10조제4항과 관련)

1. 수직주차선 설치 조건 : 주차구획 후방 이격거리가 1미터 이상

2. 수직주차선 설치기준

구 분	설 치 기 준	비 고
수직주차선 높이	0.7미터 이하	기존 주차구획선 색상과 동일하게 도색
수직주차선 너비	기존 주차구획선 너비와 동일 또는 주차장 구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0.1미터 이상 0.15미터 이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u>3. 수직주차선: 주차구획의 세로 주차구획선을 주차구획 후방 시설물의 일정 높이까지 수직으로 연장한 주차구획선</u></p> <p><u>4. 주차구획 후방 이격거리: 주차구획 내 설치된 주차정지턱과 주차구획 후방 시설물 간의 거리</u></p>
<p>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 ③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한 주차를 위하여 수직주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u></p> <p><u>⑤ 제4항에 따른 수직주차선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주차장의 구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수직주차선의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u></p>

탄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공주시 탄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1차) 승인 사항을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탄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 사업목적 : 농촌마을의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지역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3. 사 업 비 : 4,930백만원(국비 2,730, 시비 2,200) ※ 변동 없음
4. 사업내용
 - 가. 위 치 : 충남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일원
 - 나. 사업개요
 - 기초생활기반확충 : 금빛탄천 행복발전소(지상2층, 647.83㎡) 조성, 통산골 행복나눔터(주차장, 광장) 조성

- 지역경관개선 : 간판정비 35개소
- 지역역량강화 : 문화복지교육, 주민역량강화,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

5.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6. 사업기간 : 2019 ~ 2025년(7개년)

7. 사업의 효과 : 탄천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의 기본방향에 부합된 시설계획을 통해 공동체 기능의 유지,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탄천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8. 열람기간 : 2025. 12. 31. ~ 2026. 1. 13.(14일간)

9. 주요사업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승인액(A)		변경액(B)		증감(B-A)	절대값	변경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금액			
총 사업비			4,684,000 <10,716>		4,930,000 <9,891>	246,000 <-825>	246,000 <825>	5.3%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 계		3,684,992		3,770,782	85,790	85,790	2.3%
	통산골행복발전소	1식	3,285,077	1식	3,354,366	69,289	-69,289	
	통산골행복나눔터	1식	399,915	1식	318,151	-81,764	81,764	
	진입로확장(추경)		-	1식	98,265	98,265	98,265	
지역경관개선	소 계		96,445 <10,716>		89,019 <9,891>	-7,426 <-825>	7,426 <825>	7.7%
	노후간판정비	1식	96,445 <10,716>	1식	89,019 <9,891>	-7,426 <-825>	7,426 <825>	
지역역량강화	소 계		326,352		380,492	54,140	54,140	16.6%
	교육 및 견학 등	1식	199,178	1식	254,878	55,700	55,700	
	운영지원	1식	127,174	1식	125,614	-1,560	1,560	
제경비	소 계		576,211		689,707	113,496	113,496	19.7%
	기본계획비	1식	158,000	1식	158,000	0	0	
	세부설계비	1식	96,566	1식	108,302	11,736	11,736	
	공사감리비	1식	247,208	1식	255,042	7,834	7,834	
	사업관리비	1식	54,398	1식	57,856	3,458	3,458	
	기타부대비	1식	20,039	1식	-	-20,039	-20,039	
	예비비	1식	-	1식	110,507	110,507	110,507	

10. 기타사항 : 관계서류열람 (공주시청 지역활력과 ☎ 041-840-2374)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우리 시 도로명 주소 부여·변경·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2.
공주시장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은행나무길 9-1(반죽동) 외 3건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4건)				
변경	종전주소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0건)				
폐지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0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840-825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 2026. 1. 2. >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 일자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전환계획
1	충청남도공주시 반죽동 40	충청남도 공주시 은행나무길 9-1 (반죽동)	2026 0102	신규	2010 0112	지역특성 반영	고시 후 공문 발송 예정
2	충청남도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25-1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정광터1길 82-11	2026 0102	신규	2010 0112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다 하여 정가터라 불린 후 어원이 변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8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송정길 84	2026 0102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4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어물리 5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할미당길 136	2026 0102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계룡 무궁화 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계룡 무궁화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라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 산7-5번지 일원에 계룡 무궁화 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9일

공 주 시 장

□ 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 내용

1. 사업명 : 계룡 무궁화 신규마을 조성사업

2. 사업목적

- 농촌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 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를 제고하고, 도시민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와 지역 주민 간 공동체 형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3. 주요 사업내용

- 택지공급 : 36,675㎡(50세대)
 - 도로용지(사업지구 도로) 면적 6,852㎡
 - 하수도
 - 오수관로 : D250mm, L=762m
 - 오수분기관 : D150mm, L=352m
 - 상수도
 - 급수관 : D75mm, L=531m, D100mm, L=264m, D150mm, L=39m
 - 상수분기관 : D25mm, L=299m
 - 공동이용시설 : 커뮤니티시설 및 공원, 녹지조성 1식

4. 사업비의 명세

- 총사업비 : 8,460백만원
 - 기반조성비 4,230 부지매입비 4,230

5. 사업기간

- 당초 : 2024년 ~ 2026년
- 변경 : 2024년 ~ 2027년 9월 (공사 진행에 따라 사업 계획에 변경이 있을 수 있음)

6. 사업의 효과

- 농촌에 쾌적한 주거공간 및 신규마을조성으로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활성화 제고
- 농촌주민은 물론, 도시민·은퇴자 등의 농촌정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요자 요구에 맞춘 신규마을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발전 기대

7. 세부 설계도서 : 게재 생략

8. 농어촌의 부존재자원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9. 농어촌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규모/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충남도, 공주시 등 대 내·외 기관과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여 기반조성공사 조기 완료 및 분양자 전 세대(50세대) 조기 입주로 지역발전에 기여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m ²)		소 유 자	비 고
				공부상	편 입	성 명	
계	공주시	12필지		38,226	36,675		
1	계룡면 유평리	산7-5	임	35,957	35,957	임승심 외 49인	
2	계룡면 유평리	616	도	1,200	341	국(국토교통부)	

3	계룡면 유평리	370-5	도	140	140	공주시	
4	계룡면 유평리	370-3	구	278	14	한국농어촌공사	
5	계룡면 유평리	370-2	구	33	28	한국농어촌공사	
6	계룡면 유평리	363-3	도	56	56	공주시	
7	계룡면 유평리	363-2	도	7	1	국(국토교통부)	
8	계룡면 유평리	362-17	답	4	2	계룡무궁화마을정 비조합	
9	계룡면 유평리	362-11	도	288	2	공주시	
10	계룡면 유평리	362-7	임	58	46	계룡무궁화마을정 비조합	
11	계룡면 유평리	362-6	도	66	54	공주시	
12	계룡면 유평리	362-2	구	139	34	한국농어촌공사	

11. 기타사항 : 관계서류열람 (공주시청 지역활력과 ☎ 041-840-2374)

도로명주소 부여 · 변경 · 폐지 고시

우리 시 도로명 주소 부여 ·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 ·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01. 09.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길 186-7(쌍신동) 외 12건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9건)				
변경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0건)				
폐지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840-825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 2026. 01. 09. >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 일자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전환계획
1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84-2, 84-3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길 186-7 (쌍신동)	2026 0109	신규	2010 0112	쌍신동을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쌍신길로 부여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587-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남공주산단길 99	2026 0109	신규	2023 0504	남공주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 신설로 신규 도로명 부여	
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76-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별당마루길 16-3	2026 0109	신규	2010 0112	별당마루라는 지명을 활용	
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향지리 164-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향지새터길 93-1	2026 0109	신규	2010 0112	새로운 곳에 마을이 생겼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다른 지역과 중복되는 도로 명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구역 명칭 첨가	
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352-19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장터길 35-1	2026 0109	신규	2010 0112	예전에 장터가 있었던 곳이라 하여 장터길로 부여 후, 다른 지역과 중복되는 도로 명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구역 명칭을 첨가	
6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196-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길 114-1	2026 0109	신규	2010 0202	예전 의당리를 대표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의당길로 부여	
7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산정리 587-2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심방울2길 18-1	2026 0109	신규	2010 0112	마을에 화심혈의 명당이 있다하여 심방울길로 부여 후 일련번호 첨가	
8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동원리 299-3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동막마을길 101	2026 0109	신규	2010 0112	옛날에 산막이 많았던 곳으로 동쪽의 산막마을이라 하여 동막마을길로 부여	
9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쌍대리 521-3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짐대울길 41-65	2026 0109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세부내역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1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546-2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64 (금흥동)	2026.01.09.	건물 멸실에 따른 폐지
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28-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금계산로 63	2026.01.09.	건축물대장 말소에 따른 폐지
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38-3, 4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심산길 115-3	2026.01.09.	건축물대장 말소에 따른 폐지
4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백룡리 177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정곡길 100	2026.01.09.	건축물대장 말소에 따른 폐지